

국가교육위원회 제65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6년 2월 12일 (목) 15:00 ~ 17:46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김경희, 이광호
(위원) 강은희, 김 건, 김영도, 김 용, 김주성,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양오봉, 연취현, 유민봉, 윤건영,
이보미, 이슬기, 이 현, 장신호, 전은영
(총 20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21인 중 17인 출석(20인 출석 예정)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난번에 본위원회를 4시간 가량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4주 만에 만나는데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교육 난제들이 많고, 또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마련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3개의 전문위원회, 9개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또 외부 연구진 등과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사

무처도 조직이 보장되어서 활발하게 일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지만 역시 운영규칙 개정이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운영규칙 개정은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혁신을 규범화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조금 더 의사결정에 유능하고 합리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기회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이 있고, 또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3기의 임기가 3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4기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들 참석이 좀 늦으시는 분이 계시지요?
- (간사) 양오봉 위원님은 조금 늦으시고, 전은영 위원님은 지참하신다고 알려 오셨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니까 회의를 진행해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③ 안건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공개
- (보고안건)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 공개
- (보고안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공개

4 활동 보고

- (간사)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활동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지난 1월 15일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5차 회의와 제26차 회의가 지난 1월 23일 금요일, 그리고 2월 6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 회의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의제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고요. 정리된 의제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어떻게 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다음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14차·제15차 회의가 각각 1월 21일 수요일, 그리고 2월 11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 회의에서는 AI 시대 AI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원리와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가 1월 22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구성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와 제10차 회의가 1월 19일 월요일, 2월 9일 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두 차례 회의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방안과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교원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제4차·제5차 회의가 각각 1월 29일 목요일, 2월 11일 수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대학 간 연계·연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공유·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제5차 회의에서는 5극 3특 시대에

맞는 고등교육 거버넌스와 고등교육 재정 기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제3차·제4차 회의가 각각 1월 21일 수요일, 2월 4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고교 내신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대입전형 관련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제2차·제3차·제4차 회의가 각각 1월 15일 목요일, 1월 29일 목요일, 2월 9일 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정리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제3차 회의에서는 향후 활동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에서는 학교 시민교육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 제6차·제7차·제8차 회의가 각각 1월 20일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들에서는 영유아교육 분야 의제에 관련된 논의와 교육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부에서 직접 와서 발제하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영유아 공교육 체제 전환 방안, 그리고 영유아교육 분야의 특수교육 관련 발제가 있었습니다.
-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월 23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정책 의제와 관련된 발제가 있었고요.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전문가 토론회와 제7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는 1월 28일 수요일, 그리고 7차 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 토론이 있었고요. 제7차 회의에서는 인재강국 관련 정책 의제를 구체화하는 논

의가 있었습니다.

-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제5차·제6차 회의가 각각 1월 30일 금요일, 2월 9일 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분야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와 법령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제4차 회의와 국가인공지능전략 위원회와 연계한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이 각각 1월 16일 금요일, 1월 30일 금요일, 2월 5일 목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AI literacy 교육 방안 논의와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그 보고서 목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포럼에서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AI 교육 인재양성 정책과 관련하여서 교육청, 공공기관, 교육부, 과기부, 그리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회 상황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 전차 회의에서 강은희 위원님께서 중간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음 달 3월 66차 회의에서 우선 준비가 된 특별위원회들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 중간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 다음은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국가 교육위원장님과 각 9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간의 간담회가 2월 4일 수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런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전차 회의에서 결정해 주신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사무처장 활동 보고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 위원) 박영환입니다.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 제5

차·6차 회의 때 다뤘던 주요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교사들과 학생들 또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다뤄졌던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이후에 따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중간보고는 다음번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 (이광호 상임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7일 특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연취현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의사 발언을 드리면 저희가 사무처에서 발표하는 특위나 내부 활동에 대해서 지난 1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내용의 의제가, 그나마 지금 안전 제목이 들어갈 정도일 뿐이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회의 자료라든지 어떤 내용의 논의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본위원회가 형식화되어 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회의에 있었던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무슨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면 내부 위원들에게 보안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것을 확인해서 실제 국교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들이 논의과정을 알고 혹시 의사에 참여해야겠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을 뿐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가 결국 결과 보고로 이루어지는 형태라서 이 내용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라 오늘 박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강은희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대부분 특별위원회가 시도

교육청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교 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미 제9차·제10차 회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그러면 상당히 내용이 진도가 나갔는데 다음 달 3월이면 지금 저희 시도교육감님들은 3월에 마지막 총회를 하고 거의 선거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시도교육청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본위원회도 회의 진행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듯이 특별위원회도 회의록 정도는 기록이 되어서, 물론 완성된 내용이 아니어서 논란이 될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져서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정도이면 지금은 충분히 숙의된 과정이 아니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월 중순에 만약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되면 시도교육청이 준비하거나 인지하는 정도가 너무 늦게 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 (사무처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각각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다음 번 회의 때 준비를 할 계획이었던 이유가 상당수 특위들이 11월, 12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의제가 정리되고 논의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달에 보고를 드리기에는 대부분의 특위들이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 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속하게 자료 제공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은희 위원) 영유아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8차까지 회의가 되었다면 상당히 방향성이 잡히고, 또 곧 있으면 시도교육감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도 이것이 준비가 되는데 공약과 여기 국가교육위

원회에서 하는 것이 엇박자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정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한 정도는 사전 공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각 특위위원회도 발제 자료가 있고 회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 자료, 발제 자료를 위원들이 보면 안 되나요?
- (사무처장) 그 부분은 각 특별위원회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중간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단 각각 9개 특별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중간에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 (위원장) 그렇지요. 특별위원회별로 논의 진행 정도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개별 위원들의 의견 교환에 불과하고 정리가 안 된 사항으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들이 있고, 중간에 공개되는 것이 논의를 진척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는 그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 (위원장)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 논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주제별로 결론이 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공개해도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정도는 대외적인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최대한 우리 특위 쪽의 사정을 보고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되면 되겠다 싶습니다.

- (이현 위원) 예. 그래서 사무처에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아까 문제제기 하셨던 것에 관한 답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그렇게 한번,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가늠을,
- (위원장) 대학입학 제도야말로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각 주제들이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확인되고 심지어 외부적인 의견을 듣기 전에는 뭔가 결론을 내려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비공개 요청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령 내신이다 수능이다, 절대평가다 상대평가다, 또 평가방법이나 여러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서 비공개성을 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은 본위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 (이광호 상임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사무처장) 자료는 그때그때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 (강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분야마다 사실은 그전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상당 수준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치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고, 그런 앞단의 논의가 부드럽게 내용에 반영되어서 더 성숙한 논의의 구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기대가 함께 있습니다.
- (위원장) 현재 특위 논의는 각 특위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사전

선행연구나 선행 논의를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는 그 특위가
알아서 할 일인데 대체로 그 주제로 앞의 논의한 것들은 다 파
악하는 것이 보통 원칙이기 때문에, 특히 비슷한 또는 같은 이
름의 특위가 논의한 것은 거의 다 숙지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영할 만한 것은 반영하고 이어갈 만한
것은 이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은영 위원) 말씀 중에 우려스러운 지점이 좀 있어서요. 특위
에서 논의하는 것의 공개 수준은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수
준에서 하시기는 할 텐데 말씀 중에 아까 교육감선거의 정책과
엇박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될 필요성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공개의 범위가 우리 국
가교육위 본위원회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
니까 예를 들어 이 위원회에 오셨던 여기 후보님들은 볼 수가
있고 국민들은 볼 수가 없고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 (강은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전은영 위원) 기록으로 남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한
다고 하면 여기 본위원회와 국민들이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야 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그것은 조금 다른데 일단 우리 위원들께서 ‘공개할 해
도 됩니다.’ 할 때는 우리 본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것은 공개의 수준에 대해서 또 특위의 의사를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덕제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합니다. 여기서의 공
개가 국민에게 모두 공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고교특위에서 올라온 내용들
을 우리 위원들조차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토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몇 차 회
의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그 대신 보안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약속을 하고,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를 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취득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공개라고 해서 다 국민 공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특위든 전문위든 간에 그 논의 내용은 대국민적 의미를 가지려면 전부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본위원회 위원들께서 특위나 전문위의 논의 과정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것은 특위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우리 본위원회는 공개를 한다면 지금 이미 언론기자들의 참관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국민 공개까지도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전은영 위원) 다만, 그렇다면 본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교육감 후보 정책에 그렇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강은희 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현 교육감님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이견이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느냐, 실현 가능하느냐의 방향성 정도를 알고 있다면 이것이 공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방향이 꺾을 달리했을 때는 선거 이후나 혹은 정책을 결정할 때 상당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염려 차원이지 현 교육감님들께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 (윤건영 위원) 하나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안을 비공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사시에는 공론화해서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 저는 그래서 비공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촉구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특별위원회가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우리 본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입장이나 연구를 하는 하위, '하위'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전문기구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제안하는 案이라면 한 가지 案으로 올려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내용 중에는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고 어떤 案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것이 많은데 특별위원회가 하나의 案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에 압축적으로 가장 대립되는 2개의 案이라든지 그렇게 案을 제시하고 어떤 案이 되었을 때 그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충분히 해서 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아예 사회 공론화 차원에서 오랫동안 공론화하면서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우리가 결정해서 내놓고 이것이 공개되어서 서로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증폭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가 그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고 마지막에 어떤 결정이 되어도 그것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정도의 전문적인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제안을 하고, 물론 그 결정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서 마지막에 합의된 하나의 案을 내놓고 우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런 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

은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자료를 모아 주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예.
- (박영환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봤었는데 대단히 길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마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혼자서 어떤 내용을 꼭 부러지게 답변하시기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은 이후에 특별위원회들의 중간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좀 듣고 그 보고 내용 수준이나 어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후에 의사들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제가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저는 공적 논의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개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뽑고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운영의 재량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 단계는 비공개를 요한다고 할 때는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권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특별위원회 입장을 존중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이고, 이제 우리 본위원회 위

원님들께는 특별히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시도록 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얘기도 나왔는데 중간보고는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종 보고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계획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인지, 사실 더 의문을 증폭하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중간보고는 다음 회의이고요.
- (연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나름대로 매번 회의록 공개까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보고 일정이 언제쯤 되는지 최종 보고는 언제쯤 되는지만 알아도 이렇게 해서 언제 보고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 (위원장)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는 우리 사무처에서 취합해서 다음 번 회의 정도에 보고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더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료할 때는 결국 본위원회에 그 논의 내용들은 보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공개 또는 보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의결안건으로 들어가지요.

⑤ 주요 내용

가. (심의·의결안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 (간사) 먼저 심의·의결안건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발전총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료집 16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입니다. 빨간색 글씨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회의 소집 등 부분에 대해서는 법 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를 '본위원회'라고 하고, 향후에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했던 것을 7

일 전까지 해서 조금 더 일찍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안전을 2일 전까지 보내드렸던 것을 5일 전까지 보내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경우에 표결 시점에 회의에 참석 중인 위원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다고 조금 더 명료화 했습니다.

- 안전의 작성과 제출 부분에 있어서 그 제출자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하는 경우에 위원장으로 명시하였고요. 본위원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안전을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이 안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은 자동으로 본위원회 안전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18쪽입니다. 회의의 공개 부분에서는 ‘본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다만, 이 조문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고 비공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따로 적시를 하였지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개로 전환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등 허가와 방청 같은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문을 포함하였습니다.
- 그리고 19쪽은 회의 기록물 생성 등입니다. 발언위원의 성명을 포함한 속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생성하고 확인 절차와 생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 17조(회의록 등의 공개)는 16조 4항에 따른 회의록 생성 절차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조속히 당겼습니다.

- 제20조(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본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5조(합동연석회의)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참석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윤리 서약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항이 포함된 개정 문안은 21쪽부터 운영규칙(안)에 첨부하였습니다.
- (위원장)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간단해 보이는데요. 검토를 많이 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연취현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말해도,
- (위원장) 예, 하시지요.
- (연취현 위원) 일단 볼 시간이 없었던지라 안건을 빨리 보내주시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너무 환영하고요. 17쪽에 있는 8조와 관련해서 안건을 10일 전에 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환영하는데 저는 추가로 안건 제출 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간사님께 자료를 요청하면 간사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냥 간단한 내용만 적는 것보다는 background 자료를 풍성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아무튼 그런 절차 조항을 7항 정도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 또 하나는 20페이지에 있는 소위원회 부분인데요.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1기 회의에서도 소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본위원회도 지금 계

속 공개로 가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토론되는 논의 과정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냥 사전검토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것이냐, 이렇게 되어서 약간 밀실행정처럼 째짜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위원회를 결국은 하나도 구성하지 못하고 결국 본위원회를 자주 해서 진행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또 위원장님이 정하시고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 회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는 문제점들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이 소위원회를 공개할 것인지, 다른 위원들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방청처럼 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회의록을 본위원회에는 공개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제가 바로 답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 의견도 다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 (손덕제 위원)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제15조 (회의의 공개)를 보면 바뀐 부분이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안건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대부분 공개로 이렇게 하지만 비공개 될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비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안건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 그렇게 바꾸지요. 아주 좋습니다. 문구를 바로 적지요. 다른 분들 말씀하시지요.
- (유민봉 위원)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25쪽에 전문위원회 제22조 제2항을 보면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17쪽에 본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조의 2항을 신설했는데요. '의결이 필요한 안건 등은 표결로써 의결하며, 표결 시점에 회의에 참석 중인 위원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표결이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간에 이석하는 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위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회도 출석위원 과반수인데 전문위원회에서도 출석을 했는데 중간에 이석을 하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제4조 2항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한 의결 요건을 갖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타당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맞추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렇게 사무처에서 맞춰서,

- (이보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
- (이보미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도 있고, 여기에도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에 제15조(회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운영규칙 案으로 되어 있는 제8조의 5항은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 시행령과 이 운영규칙의 안건 제출 정족수가 조금 상이한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 (위원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 제출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해 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 위원들의 제안과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인데 우리 위원들도 안전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과 시행령에 없는 것들을 포함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안전 제출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위원장에 한해서 해야만 된다는 특별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서 이렇게 안전 제출자를 확장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는 것인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희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발언 안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드려서 이 안전 발의 건은 안전이 올라왔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부가 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안전을 스스로 창출해서 안전을 올리면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올릴 때 엄청 고민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단체의 의견도 들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 발의 건을 주자, 마치 국회에서 보면 10인 이상이 법안 제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몇 명이 적정한가 이것을 많이 논의하다가 5분의 1이면 다섯 분이거든요. 다섯 분이 합의를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의결할 때는 과반수입니다. 우리가 21명이니까 11명이 찬성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책임감과 전문성 등등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들도 이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의를 한 겁니다. 참

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슬기 위원) 저 한 말씀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예.
- (이슬기 위원) 저는 이번 案이 투명성도 증진하고 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권도 증진하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계속 연속해서 나왔던 案인데, 연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案과 비슷한 것인데 혹시 위원들의 자료요구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설할 수 없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 비상임위원이고 사무처에 상시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는 만큼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규칙으로 명시해서 통보 기간이나 만약에 그 제공이 어렵다면 그 제공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비밀유지 서약 같은 조항을 포함해서 한다면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드리고 사무처도 답변을 하실 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어떨까 합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쪽의 8조에서 7항을 추가하자는 의미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안건을 5인 이상이 제출할 때 사실 관련 데이터들을 본인이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사무처 혹은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요청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는 것은 너무 강한 주장 같고 ‘요청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무처의 누가 보고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우리 사무처 내에서 누가 가장 잘 아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정도, 이 정도의 문구가 추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연취현 위원님께서서는 안건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좀 넓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슬기 위원 얘기

를 해석하면 안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판단하기 위한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른 부처는 반드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받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안전 제출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사무처에게 요구하는 절차가 잘 정립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8조에 그냥 7항으로 만드는 것보다 한 조를 더 신설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전 제출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저는 요청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규정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규정이 있어야 안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규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은 따로 신설하기보다는 항을 늘리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건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은영 위원님.
- (전은영 위원) 저도 조금 보태고 싶은 것이 이것이 기존에 우리 본위원회에서 안전이 생성되었던 것은 교육부에서 넘어오거나 국민 청원이 있거나 교육과정 개정 쪽은 또 어떤 특정 수를 맞춰야 되고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본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조항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독립적인 전문성을 굉장히 인정하는 차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의 요지는 조건을 조금 더 맞췄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고민을 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소관사무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교육과정 개정에 관련한 의견을 만약에 5분의 1의 위원들께서 제출하고 싶다면 그 이전에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이 또 있는 것이고, 안전 제출할 때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든다고 막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출 조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 그다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든 안전을 의결 처리할 것인지, 토론할 것인지, 그런 처리방법도 조금 더 숙고하고 정리를 더 해서 여기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어설피 보인다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자료 요청 부분과 방금 전은영 위원님 말씀은 좀 더 균형 있게 신중한 조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회의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운영규칙 개정(안)을 오늘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음 번 회의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문화 작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취현 위원) 저는 최종 문구를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는 만들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라고 그러면 문구 작성에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확실히 걸려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취현 위원) 우리 사무처의 인력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전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안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간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든지 '협조한다.' 간략하게 그 정도의 문구이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꼭 안전을 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폭넓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에서는 의무화되지 정도의 안건을 저는 만들어봤고요. 오늘 이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올려봅니다.

- (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18쪽 19조의 방청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셨던 안건들은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잘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마음인데요.
- 그런데 자칫해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청 같은 경우에는 회의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한 100명 단위의 방청 요구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회의장의 준비 정도나 안전에 대한 공개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일에 결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뭔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방청 신청하는 별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본안에 며칠 전까지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방청이나 아니면 안건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더 추가로 보완해서 다음으로 넘겨서 진행하다 보면 그때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통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案은 빼고 나머지 案들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

- (위원장) 저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급한 것은 없고요. 손볼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검토할 사항이 조문화 작업도 해야 되고, 시간에 쫓겨서 하면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메모했다가 다음 회의 때 통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하는 것과의 차이는 우리 위원님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다음 회의까지 안전 제출을 못 하잖아요.

(웃 음)

- (이보미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혹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검토를 하셔서 혹시 案이 나오면...
- (위원장)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분 동안 한번 만들어볼까요? 방금 10분 내에 발언한 분들은 다 위원장석 쪽으로 와 주십시오.

(웃 음)

그래서 문구를 만들어보지요.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오후 3시 58분 회의중지)

(오후 4시 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휴식시간에 협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처에서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 17페이지에 제7항을 ‘제5항에 따른 안전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전에 간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19조의2(방청)에 ‘본위원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1일 전까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22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2항 다음에 3항으로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 등은 표결로써 의결하며, 표결 시점에 회의에 참석 중인 위원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구두로 표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8조 5항 안건 제출과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방금 낭독해 드린 수정된 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손덕제 위원) 아까 15조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15조요?
- (손덕제 위원) 15조 3항에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 안건으로 공개 전환할 수 있다.’
- (위원장) 예. 그것도 보완하겠습니다. 방금 손덕제 위원이 낭독한 그대로 보완하겠습니다. 다 메모하셨지요?
- (이현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문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3조에 보면 마지막에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좀 걸리더라고요. 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3항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위원장) 예.
- (이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17조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서 ‘아니하다.’가 아니라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제가 읽은 법률 조문들은 전부 ‘아니하다.’입니다.
- (이현 위원) ‘아니하다.’입니까? 그러면 뒤에 17조도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 (위원장) 예. ‘아니하다.’의 줄임말이 ‘않다.’입니다. 이것을 줄이

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 (이현 위원) 예. 그런데 17조는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서요.
- (위원장) ‘한다.’가 아니고 ‘아니하다.’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렇게 통일하겠습니다.
- (이현 위원) 예.
- (김주성 위원) ‘아니한다.’는 동사이고, ‘아니하다.’는 아마 형용사 쪽일 거예요.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 (김건 위원) 위원장님, 질문 간단하게 드릴 것이 있어서요. 아까 연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페이지의 소위원회 관련된 질문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저도 들어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고요. 25조(합동연석회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본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가 같이 하는 것만을 명시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에서 이 문구를 추가하셨는지,
- (위원장)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간 모든 형태의 합동연석회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 (김건 위원) 그러면 본위원회에 와도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본위원회는 최종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보통 합동을 잘 안 하지요. 사전검토기구와 같이 합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합동 회의라기보다는 보고를 받거나 설명을 청취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의라고 보통 부르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된 案으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방금 20페이지의 소위원회는 이미 통과되었지만 취지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오로지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회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같은 것은 전부 본위원회가 정하는 것이고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5인 전원을 본위원회가 구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위원장을 정하는 문제로 또 이렇게 오래 끌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 다섯 분이 정해지면 그 소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위원장이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案을 올렸습니다.

- 그다음에 오늘 운영규칙 개정의 하이라이트는 8조 5항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듯이 법령상 위원들에게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운영규칙으로 창설하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회들을 제가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등등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도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제안하는 기능이 있는데 전부 본위원회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소관부처 검토라든지 소위원회 심의라든지 위원장의 결재라든지 그것을 받고 올립니다. 저는 이것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회에서 사전에 걸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제나 선입견 없이 토론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면 자동 상정됩니다. 자동 상정되고 안건 토의는 우리 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냥 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오늘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위원들의 지혜가 다 모일 수 있는 더 좋은 운영규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운영규칙 통과를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심의·의결안건)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

- (간사) 그러면 다음으로 심의·의결안건인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에 대해서 숙의공론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잠깐만요. 김 건 위원님 등 제안이 있었잖아요. 이것 다 가지고 계시지요? 특별위원회 추가 설치 요구에 관한 건이 있는데 특별위원회 2개에 대해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그런 案입니다. 제안근거 있고 설치 필요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다음번에 안건으로 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오늘 이것을 다루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안건 제출 절차를 새로 만든 서식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참위에 대해서 진행하지요.
- (보고자)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건입니다. 4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참여위원장 관련 주요사항입니다. 저희 국가교육위원회 법령에 따르면 참여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재직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역할은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 그리고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개최 계획을 사전에 국교위에 보고하고 활동 결과도 국교위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위원 선정과 해촉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안으로서는 이광호 상임위원을 지명하였고요. 지명 이유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국참위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소통

및 본위원회 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서 폭넓은 현장, 학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 국참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위원들을 원활히 총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입니다. 지난 제64차 회의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고시 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0일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국민 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검토도 거쳤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수정 의견이 한 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고등직업교육 관련자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절차 관련 고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위원을 추천할 때 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거나 결원 충원 시 세부 직능별 쿼터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은 이미 충분히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선발하는 공개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단계에서 각 직능에 대한 세부 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대분류에 있는 교육관계자, 그리고 중분류에 있는 대학 교원, 그리고 소분류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단에 학생·청년 부분도 보시면 대학생을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고, 고등학생도 일반계가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과 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부 분류까지 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제도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서 수정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민참여위원회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활동

시에 국민참여위원 외의 자를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시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유연한 활동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개정 확정(안)을 보시면 현행 제8조 4항은 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어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른 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 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습니다.

- 만약 고시안이 심의 의결된다면 이후에 고시 개정안 확정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월 19일부터는 연임 위원에 대한 확정 절차, 그리고 2월 23일부터는 공개모집 및 지방정부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심사 및 최종 구성을 4월까지 하고 5월부터는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안과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두 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도 위원) 위원장님. 47쪽에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을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경북대가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본위원회에 와서도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하는 직업계고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 또 사실은 고용노동부 산하이기도 해도 폴리텍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회의 구성 자체에서 직업계 교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 사실 국민 참여는 적절히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아주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는 훌륭한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성이,

- (김영도 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늘 이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둘인데 국민참여위원장을 왜 이광호 상임위원이 하느냐고 혹시 질문하실까 봐서요. 둘이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이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담 차원에서 나눴고, 또 이광호 위원이 저보다 젊어요.

(웃 음)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시 왜 둘이 안 하느냐, 왜 김경희는 안 하느냐 질문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 이 정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부처의 차관급들로 CAIO 기구를 구성해 두고 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을 김경희 상임위원께서 맡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나누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하시고요.
- (위원장) 더 중요한 것이 있군요. 교육부 중심으로 논의되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 국가교육계획 중에서 재정 차원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의 사 봉 3 타)

다. (보고안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 (위원장) 그다음에 보고안전을 진행하시지요.
- (간사) 다음 보고안전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자)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입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제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료집 54쪽입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현재 3기는 작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올해 3월 말 1년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단 3기의 활동 개요를 보고드리고 4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니터링단 3기는 우선 지난해 4월 발대식 이후에 연수 등을 통해 단원들의 교육과정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역할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에 대한 각 진행 단계별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과정에 참여하는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모니터링단의 임기 확대 등 차기 모니터링단 운영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자료집 55쪽입니다.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단 4기 규모는 200명에서 119명을 증원한 319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학생·학부모 68명, 교원 221명,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임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원의 구성은

학생·학부모, 교원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전문가팀은 대학, 연구기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자료집 56쪽입니다. 추천이 완료되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국가교육위원장이 단원을 위촉하고 단장을 지명하게 됩니다. 모니터링단은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시 단계별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시 각 단계별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과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도 적기에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단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7쪽부터 60쪽은 이에 대한 향후 일정과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희 위원) 제가 지난번 교원 팀에 대해서 사실 그때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모니터링단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제안을 못 드렸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인원이 17명이면 사실, 물론 자유롭게 응모를 해도 되지만 국가교육과정은 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쪽이라서 유·초·중·고 모두에 다 해당이 되고 직업계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최소한 시도교육청에서, 물론 전문가 집단에 시도교육청이 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인원이 전문가 집단은 3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조금 전문성 있게 모니터링, 물론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신뢰를 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모니터링단 인원이 지금 17명 내외여서 적어도 한 2배 정도를 해 주시면 각 시·도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 (보고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명 내외라고 하고 것은 각 시도교육청별 17명 내외를 말씀드립니다.
- (강은희 위원) 한 시·도에 17명이요?
- (보고자) 예.
- (이광호 상임위원) 거기 표에 보면,
- (강은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 (이광호 상임위원) 교육청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그러면 보고사항을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유민봉 위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17명 내외라면 17개 시·도의 17명 내외, 그러면 사실 221명은 훨씬 더 넘는 것이지요.
- (보고자) 예.
- (유민봉 위원) 그런데 하여튼 평균을 한 17명 내외라고 하니까 15명이나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 (보고자) 인원 수 조정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민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접수를 하겠습니다.

⑥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66차 회의는 2026년 3월 12일 개최

㉓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회의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 사 봉 3 타)

(일 동 박 수)